

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주식]

- 변경 사항: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
 ②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
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
 ④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효력발생일: 2023. 10. 24.

□ 변경 내용

| 항 목                  | 정정사유  | 정 정 전   | 정 정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|
| <b>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</b> |       |   |   |
| 투자결정시<br>유의사항<br>안내  | 기재 정정 | 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 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<b>경과하였음에</b> 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
| <b>요약정보</b>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투자비용           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<u>2023. 8. 31. 기준</u> |
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| 반기 기준으로 갱신          | - | <u>2023. 4. 27. 기준</u> |
|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| - | <u>2023. 9. 30. 기준</u> |

|          |       |  |   |
|----------|-------|--|---|
| 투자자 유의사항 | 기재 정정 |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<b>경과하였음에도</b>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|----------|-------|--|---|

|    |              |   |   |
|----|--------------|---|---|
| 과세 |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| 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700만원</u>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조의 3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 | 세액 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900만원</u> 한도로 12%( <b>종합소득금액 4.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</b> 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조의 3 제 1항제 1호 및 제 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 |
|----|--------------|---|---|

**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

|  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5. 운용전문인력<br>가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<u>2023. 9. 30. 기준</u>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<br>기구에 관한 사항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<u>2023. 9. 30. 기준</u> |

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<br>변경 내역   | 최근 3년 경과 내역 삭제         | 현혜정(2018.03.30~<br>2020.04.13)   | <삭제>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<br>변경 내역<br>[이 투자신탁이 투자<br>하는 모투자신탁의 운<br>용전문인력 최근 변경<br>내역] | 최근 3년 경과 내역 삭제         | 현혜정(2018.03.30~<br>2020.04.13)   | <삭제> 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<br>자대상<br>가. 투자 대상<br>[이 투자신탁이 투자<br>하는 모투자신탁의 주<br>요 투자 대상]              |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<br>개정사항 반영 | -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증권<br>모투자신탁[주식]<br><신설>   | -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증권<br>모투자신탁[주식]<br><u>증권대차거래 목적 등 기재</u>  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<br>자대상<br>나. 투자제한   | 기재 정정                  |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<br>▶ 투자신탁 자산총액의<br>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<br>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<br>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<br>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<br>행위. 단, 집합투자업자의 대<br>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<br>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<br>운용할 수 없음<br>- 제 17조 제 2항 제 1호에<br>따른 단기 대출 |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<br>▶ 투자신탁 자산총액의<br>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<br>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<br>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<br>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<br>행위. 단, 집합투자업자의 대<br>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<br>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<br>운용할 수 없음<br>- <u>법 제 83조 제 4항에 따</u><br>른 단기 대출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<br>관한 사항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<br>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<br>기준으로 기재 | -  | <u>2023. 8. 31. 기준</u> 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<br>세에 관한 사항<br>나. 과세   |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         | 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<br>대한 과세<br>※ 별첨 참조   | 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<br>대한 과세<br>※ 별첨 참조  |

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재무정보               | 반기 기준으로 갱신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| <u>2023. 4. 27. 기준</u>  |
| 1. 재무정보<br>가. 요약재무정보  |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<br>개정사항 반영 | <신 설><br><br><신 설> | <u>증권대여 또는 증권차입에<br/>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<br/>용 내역</u><br><u>&lt;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<br/>래비용&gt; 및 &lt;주식의 매매회<br/>전율&gt;</u>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<br>매 현황 | 반기 기준으로 갱신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| <u>2023. 4. 27. 기준</u> 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<br>용실적   | 반기 기준으로 갱신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| <u>2023. 4. 27. 기준</u>  |

####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|  |            |  |  |
|--|------------|--|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<br>한 사항<br>가. 회사 개요 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 | <u>2023. 9. 30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<br>한 사항<br>다. 최근 2 개 사업연<br>도 요약 재무내용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<br><u>제 23 기(2020.12.31)</u> |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<br><u>제 24 기(2021.12.31)</u>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<br>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모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-  | <u>2023. 9. 30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<br>시에 관한 사항<br>나. 수시공시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<br>사항 반영 | (2) 수시공시<br>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<br>의 결정 및 그 사유대통령령<br>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<br>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<br>률 | (2) 수시공시<br>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<br>의 결정 및 그 사유대통령령<br>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<br>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<br>률( 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<br/>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<br/>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<br/>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<br/>포함한다</u> 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
※ 별첨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| 구분   | 주요 내용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납입요건   | 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br>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br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수령요건   |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공제제도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합소득금액<br/>(총급여액)</th> <th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<br/>(퇴직연금 포함)</th> <th>세액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.5천만원 이하<br/>(5.5천만원 이하)</td> <td>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.5천만원 초과<br/>(5.5천만원 초과)</td> <td>(900만원)</td> <td>1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종합소득금액<br>(총급여액)          |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<br>(퇴직연금 포함) | 세액공제율 | 4.5천만원 이하<br>(5.5천만원 이하) | 600만원 | 15% | 4.5천만원 초과<br>(5.5천만원 초과) | (900만원) | 12% |
|  | 종합소득금액<br>(총급여액)   |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<br>(퇴직연금 포함) | 세액공제율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4.5천만원 이하<br>(5.5천만원 이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0만원  | 15%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4.5천만원 초과<br>(5.5천만원 초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900만원)  | 12%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※지방소득세 별도<br>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연금수령시 과세   | 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<br>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분리과세한도   |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<br>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<br>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<br>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<br>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연금외수령시 과세  | 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해지가산세  | 없음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<br>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<br>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<br>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| 연금계좌 승계  | 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전]

| 종합소득금액<br>(총급여액)       | 세액공제 대상<br>납입한도<br>(퇴직연금 포함) | 50세 이상<br>세액공제 대상<br>납입한도<br>(퇴직연금 포함) | 세액공제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4천만원 이하<br>(5.5천만원 이하) | 400만원<br>(700만원)             | 600만원<br>(90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|
| 1억원 이하<br>(1.2억원 이하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2%   |
| 1억원 초과<br>(1.2억원 초과)   | 300만원<br>(700만원)             |  |       |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| 종합소득금액<br>(총급여액)         | 세액공제 대상<br>납입한도<br>(퇴직연금 포함) | 세액공제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4.5천만원 이하<br>(5.5천만원 이하) | 6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|
| 4.5천만원 초과<br>(5.5천만원 초과) | (90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| 12%   |

※지방소득세 별도

<삭 제>

<신 설>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